

【별지】

국민연금공단 공무직(시설직, 환경관리직) 공개채용 공고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진안지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직(무기계약직)** 지원자를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공무직(시설직, 환경관리직)

※ 시보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직(무기계약직)** 정규 임용

수행업무

구분1	구분2	수행업무
시설직	소장(마)	• 사옥시설물의 유지보수 종합계획, 점검 및 보수의 현장감독 및 결과보고, 사옥의 필요에 맞는 안전관리자 관련업무, 기타 사옥담당자의 업무전달 및 사옥관리 관련 업무분장으로 부여 받은 업무 수행 등
환경관리직	주임(가)	• 사옥 및 시설물의 내·외부 청소(화장실 포함), 쓰레기 수거·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조경관리 등 관련업무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근무지	인원	임용 예정일
시설직 소장(마)	전주완주지사	1	2024.5.29.(수)
환경관리직 주임(가)	진안지사	1	2024.5.29.(수)

지원자격

채용분야	지원자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정년) 시설직 만 60세, 환경관리직 만 65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참고1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시설직 소장(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물(사옥)관리 또는 아파트 관리 총괄책임(소장) 3년 이상이거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세부기준 ‘참고2’ 참조 ** 전기, 에너지, 공조, 건축, 소방, 가스
환경관리직 주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지원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은 없음 ※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 (경력산정) 30일을 1개월로,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인정되는 자격증 〉

분야	자격증
전기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안전기술사
에너지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공조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소방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가스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5.2.)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근무장소: 시설직(전주완주지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환경관리직(진안지사 -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25)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
시설직 소장(마)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하며, 일 8시간 범위내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환경관리직 주임(가)	• 1일 6시간(08:00~15:00),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하며, 일 6시간 범위 내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정년: 시설직 만60세, 환경관리직 만65세

보수월액

시설직 소장(마)	환경관리직 주임(가)
3,229,000원	1,756,500원

- ※ 식비,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자격수당, 가족수당 등 추가 지급되는 수당은 없으며(야근수당만 지급 가능), 복지포인트, 단체보험은 별도임
- ※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으며,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산정과는 무관함

2.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내용	일정
지원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방법: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서류 모두 도착(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4.4.25.(목) ~ 5.2.(목) 18:00까지
서류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요건 충족여부, 경력, 자격사항,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자기소개서는 각 항목별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 	<합격자 발표일> `24.5.10.(금) ※ 개별안내
인성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 미참여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검사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어 참고자료로 활용 	`24.5.10.(금) ~ 5.12.(일) ※ 개별안내
면접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방법: 조별면접(1개조 5명, 조별 30분 내외) 실시 	`24.5.16.(목) ※ 개별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전형 합격자 중 채용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분야별 각 2명의 예비합격자 선발 	`24.5.22.(수) ※ 개별안내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보기간(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원(무기계약직) 정규임용 	`24.5.29.(수)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역 (※ 면접전형 시 제출)
공통 (대상자 전체)	<p>1. (경력사항 관련) - 경력사항 기재자 아래 사항 필수 제출(1-1, 1-2 모두 제출)</p> <p>1-1)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u>경력증명서</u> 전체</p> <p>1-2) <u>4대보험 가입 증명서 1종</u></p> <p>※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1종</p> <p>※ 입사지원 시 경력사항에 기재한 사항이 <u>경력(재직)증명서</u>를 통해 <u>관련분야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과 일치하여야 인정됨</u></p> <p><u>(경력(재직)증명서 상 해당업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u></p> <p>※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및 경력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는 것이며, 공무원은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산정과는 무관함</p> <p>2. (우대사항 관련) - 해당자에 한함</p> <p>2-1)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증명서</p> <p>2-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p> <p>2-3) <u>다문화가족 증빙서류</u>(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u>접수마감일(24.5.2.)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u></p>
시설직 (마)	<p>1~2. 공통 제출서류 전체</p> <p>3. (자격사항 관련) - 입사지원 시 기재한 각 분야 <u>자격증 사본</u></p>

4.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적용단계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동일분야·지역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하고, 4명 미만은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순전형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순전형	1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서류전형	5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서류전형	5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 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서류전형	5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적용단계	가점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서류전형	5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서류전형	5
공무직 (시설직)	우리 공단에서 공무직(시설직)으로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 하고 근무성적평정표 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사람 *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은 제외하며, 단시간 근로의 근무기간 환산은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 * 환경관리직, 보안직 서류심사 시에만 적용	4대보험 증명서, 경력증명서	서류전형	5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4. 5. 2.)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5. 이의신청 절차 운영

- 접수처: nps02411@nps.or.kr
- 운영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24.5.22. ~ 6.6.)
- 세부방법: 지원자의 메일문의에 답변
- 예외사항: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응시자, 전형위원 등의 개인정보 및 타 법령에 접촉되는 사항',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기타 개인정보보호 및 공정채용을 위배하는 사항' 등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격, 경력,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2024. 5. 2.)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 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3개월 기간의 시보로 임용되며, 시보기간 중 근무 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임용일 전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광주지역본부(062-958-200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5.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 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구 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전주완주지사는 1,500kw 미만으로,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도 지원이 가능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요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 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3) 지하구
-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 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1.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 이 표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자격기준별 실무경력 기간을 해당 실무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선임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전주완주지사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임